#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(송기헌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8021

발의연월일: 2021. 2. 9.

발 의 자:송기헌·이광재·최혜영

강득구 · 민홍철 · 김홍걸

조승래 • 박성준 • 김민기

윤관석 • 백혜련 • 최인호

의원(12인)

#### 제안이유

최근 재개발을 앞둔 정비구역 내 화재가 발생하여 재산·인명 등의 피해가 지속되고 있음. 무허가 판자촌 등의 낙후지역은 진입로가 좁아 소방차량의 출동이 어렵고, 건축물의 소재가 가연성 물질들로 구축돼 화재 발생 시 대형참사로 이어지는 상황임.

현행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130조는 시장·군수 등이 '정비구역의 범죄 예방'을 위해 관할 시·도의 경찰력을 통해 순찰 강화 및 범죄예방 필요 시설의 설치 등을 요청할 수 있음.

반면, 정비구역 내 화재로 인한 재산·인명 피해는 매년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예방하는 방안 및 근거는 미비한 실정임. 그러므로 이를 법률에 명시해 주거낙후지역의 안전을 강화하려 함.

## 주요내용

시장·군수는 사업시행인가를 한 경우 그 사실을 관할 소방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하고, 정비구역 내 화재예방 순찰 강화 및 화재예방을 위해 필요한 시설·용품의 설치 등 주민 안전을 위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(안 제130조의2 신설).

#### 법률 제 호

##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
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3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제130조의2(정비구역의 화재예방) ① 시장·군수등은 제50조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를 한 경우 그 사실을 관할 소방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  - ② 시장·군수등은 사업시행계획인가를 한 경우 정비구역 내 주민 안전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할 시·도 소방본부장 또 는 소방서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.
  - 1. 화재예방 순찰 강화
  - 2. 화재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·용품 등의 설치 및 관리
  - 3. 그 밖에 주민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### 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현 행 <u>&lt;신 설&gt;</u>	제130조의2(정비구역의 화재예방) ① 시장·군수등은 제50조제1 항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를 한 경우 그 사실을 관할 소방 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 ② 시장·군수등은 사업시행계 획인가를 한 경우 정비구역 내 주민 안전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할 시·도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. 1. 화재예방 순찰 강화 2. 화재예방을 위하여 필요한
	시설·용품 등의 설치 및 관리3. 그 밖에 주민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